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면허 성격의 택시 면허가 남발됨에 따른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적용할 총량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맞춰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총량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총량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택시공급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 : 044-201-4759 / 팩스 : 044-201-5581
- 이메일 : kdj7788@korea.kr